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12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윤건영·조 국·박지원

이기헌 · 신정훈 · 김영배

양부남 • 한병도 • 위성락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 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 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 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6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3항에 따라 유료직업소
	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직자에게 고
	<u>지할 것</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